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CWORKERS

KBS본부 파업 특보

파업 특보

2호 (총16호)

발행인: 엄경철
발행일: 2010년 7월 5일(월)

트위터: @kbsunion 블로그: www.kbsunion.net

파업 5일, 폭우도, 폭염도, 폭압도, 우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사측과 하늘의 방해에도 1, 2일차 투쟁 상황 새노조 단결력에 사측 깜짝

파업 첫 날(7월1일) 전국 조합원 총회에는 무려 700여 명이 참석했다. 본관 계단이 그토록 작게 느껴진 것은 실로 20년 만이다. 땀방울이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긴 집회를 대부분 다 소화해 냈다. 파업 둘째 날(7월2일)에도 참여 인원은 줄지 않았다.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고 집회 장소도 봉쇄된 상황에서 본사 조합원 500여 명은 집회를 이어갔다. 대국민 선전전용으로 인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만 장은 불과 하루 만에 소진됐다. 추가로 2만 장을 더 찍을 예정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파업 선전전은 내일(7월6일) 계속된다.

사측, 비열한 방해 계속 위원장, “의연하게 파업 진행하겠다”

사측은 청경을 동원해 KBS 민주화의 상징인 <민주광장>을 봉쇄했다. 조합원들의 신관 주차장 진입까지 막았고, 신관 로비 출입도 봉쇄했다. 새노조를 밖으로 내 몰아, 비조합원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비열한 공작이다. 또 새노조 조합원을 자극해 불법파업의 빌미를 만들려는 비겁한 술수다. 힘으로 한다면 새노조 조합원들은 100명도 되지 않는 청경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측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열한 방해 공작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인내심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 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오로지 사측에게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사측, 파업열기와 민변 의견서에 당황 간부 협박 전화, 괴문자 등으로 조직적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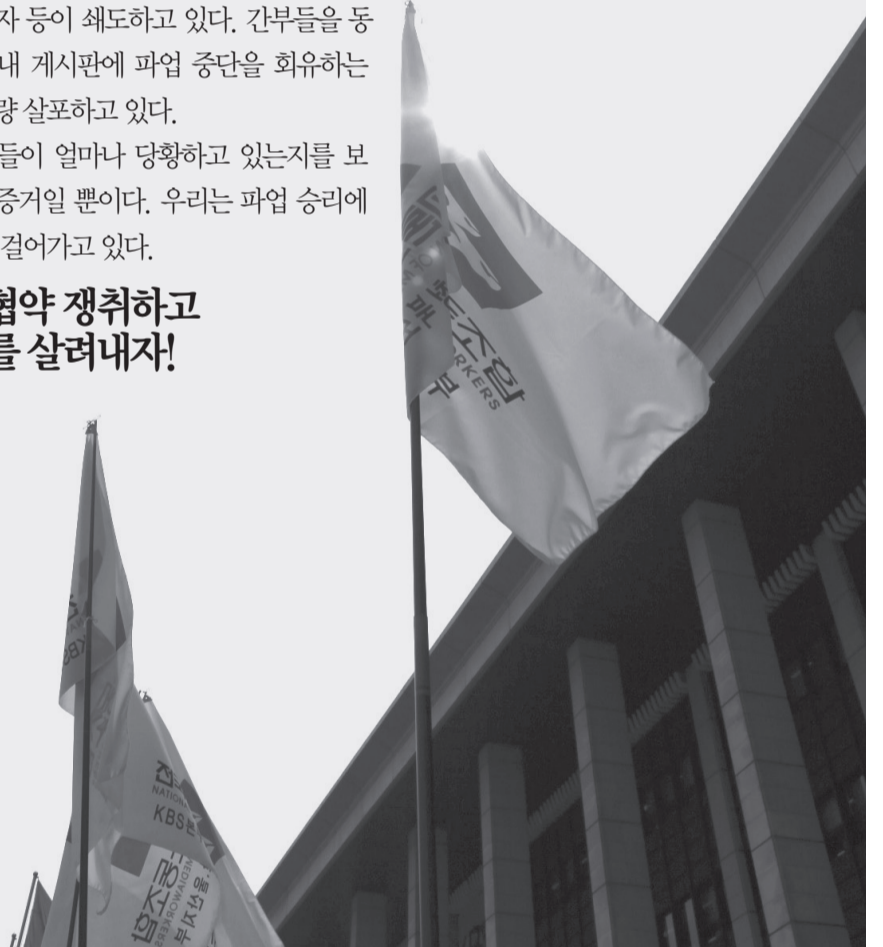
7월2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KBS 파업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

법 등 모든 측면에서 합법이라는 공식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상세 내용은 뒷면에) 또 온갖 방해 공작에도 파업 열기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천하무적야구단>과 <1박2일> 등 주요 프로그램이 파행을 겪으면서 KBS 새노조의 파업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여론은 KBS 새노조의 파업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측은 당황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들을 징계로 협박하고 복귀를 종용하는 간부들의 전화와 문자 등이 쇄도하고 있다. 간부들을 동원해 사내 게시판에 파업 중단을 회유하는 글을 대량 살포하고 있다.

모두 저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우리는 파업 승리에 한 발씩 걸어가고 있다.

단체협약 쟁취하고 KBS를 살려내자!



뜨거운 파업 기금

모금 熱氣 2000만 원 돌파

6월28일 시작된 파업 기금 모금이 7월 2일을 기준으로 닷새 만에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파업 후원 계좌에는 비조합원과 익명의 모금액도 줄을 잇고 있다. CMS 계좌이체 동의서로도 지금까지 3천여만 원이 모금됐다. 새노조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임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MBC와 SBS본부를 포함한 언론노조 각 방송사 지.본부에서도 거액의 파업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자금 사정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총파업 지침 2호

- 1 이번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 파업이므로 사측의 업무복귀 명령은 원천 무효이며, 일절 응하지 않는다.
- 2 사측 간부의 전화, 문자에 절대 응하지 않으며, 불이익·징계 등의 협박은 증거를 보존하고 해당 간부의 직위와 이름을 노조 비대위에 신고한다.
- 3 합법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 및 결과는 전적으로 사측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사측의 회유 및 협박에 동요하지 않는다.
- 4 근거 없는 유언비어, 마타도어에 현혹되지 말고, 조합 비대위 등에 문의한다.
- 5 청원 경찰의 옥설 및 몸싸움 유도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고, 노조 비대위의 현장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2010년 7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 파업 후원 계좌 : 하나은행 145-910119-22307 (엄경철)

민변, “KBS본부 파업 합법이다”

법률의견서,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법 모두 정당하다”

7월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KBS본부의 파업에 대해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쟁의행위가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4가지 전제 조건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모든 항목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 파업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변의 의견서를 요약한다.

1. 주체

전국언론노조(KBS 본부노조)가 주체가 된 것으로 문제없음

2. 목적

신생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려 3개월간 교섭을 거부했고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80여개의 불일치 사항이 남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기간과 조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측과 교섭을 계속하였다가 결렬된 점, 이번 단체교섭과 파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이 설립된 노조가 최초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측은 2010년 임금협약에 대하여는 2010년 말경에 해

야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면서 교섭장소에서 퇴장하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고 단체교섭 자리에 사용자측 대표자가 계속 참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단체교섭에 사용자측이 불성실하게 응하여 온 것이 교섭 결렬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파업과정에서 표명되는 추상적인 슬로건과 파업의 목적 역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새로이 설립된 노조가 단체협약과 해당 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파업의 목적에서도 정당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3. 절차

노동위원회에 사전 조정절차를 거쳤는지와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 노조는 노사간 단체교섭 결렬 이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였고(재적조합원 대비 약 87% 찬성),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조정절차를 완료.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모두 이행했음.

4. 수단과 방법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점거농성을 보면 직장점거란 노동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공장 등 회사 내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거나 이를 점거하는 쟁의수단. 직장점거는 단결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파업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로비, 주차장 등 주요 생산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부수적 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수단과 방법도 문제가 없음.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131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 사측이 제기한 문제 검토

1. 조직개편 관련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사업장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비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것과 상당기간의 단체교섭과 그 결렬로 인해 발생한 파업의 주된 목적은 구분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2.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KBS노동조합과 합의한 수준 이상'의 요구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내에 복수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 노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3.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요구 관련

근로자참여협력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사공동위원회로서 그 법적 지위와 기능은 다른 것으로 각 노조마다 별개로 설치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임.

4.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관련

언론 중사자에게 있어서 이른바 공정방송의 문제도 언론 노동자의 근로제공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없음.

5.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요구 관련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역시 타당한 이유가 아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이번 파업은 그 주체, 절차, 수단과 방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시민과 함께하는 KBS 개념탐재의 밤

파업 시민 문화제 7월 7일(수) 저녁7시, 본관 계단

파업 이모저모



청년들과 함께하는 신선한 총파업



민주광장까지 봉쇄한 사측



이번파업의 아이콘-박대기와 발바닥



'씨징빙'도 함께한 총파업



이상은...수준높은 문화공연도



분단된 신관계단



이제 국민속으로 갑니다

총파업을 맞는 드라마국 조합원의 결의

KBS의 암울한 미래에 먹먹한 가슴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없었습니까? 민주주의와 상식이 실종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되살리고 온전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이번 언론노조 KBS본부 총파업에 드라마국 전 조합원은 결연한 의지로 동참하려 합니다. 지금 한편의 KBS드라마를 만드는 것보다 향후 KBS 드라마의 미래를 위한 이 중대하고 신성한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임을 알고 분연히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 자침에 의거하여 모든 행동을 통일하기로 결의합니다.

하나, 연출, 조연출, 공동연출, 프로듀서까지 모든 드라마국 조합원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촬영과 편집 등 모든 드라마 제작업무를 중단할 것입니다. 둘, 모든 드라마국 조합원은 그 어떤 업무지시나 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셋, 모든 드라마국 조합원은 '나 한 명의 헌업 복귀가 파업대오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끝까지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롭지 않습니다!

- 마침내 그들이 일어섰다. 눈물로 얼룩졌던 몸부림이 산맥처럼 당당한 희망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 >
- KBS노조의 총파업투쟁은 공영방송 KBS를 살리는 투쟁이자 법으로 규정한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투쟁이다. - < 미디어행동 >
- 결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기 바란다. 수많은 시민, 네티즌들이 함께할 것이다. -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
- 새 노조의 파업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되었다. 새 노조와 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 민주언론시민연합 >
- 공영방송 시수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시작한 새 노조에게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뜨거운 7월, 빼앗긴 KBS에 드디어 봄이 오고 있다. - < 문화연대 >